

---

# 지식재산기본법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

윤 원 길\*

## 목 차

---

- I. 서론
- II. 제정 추진 경과
  - 1. 정부입법안 국회제출 경과
  - 2.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 III.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의
- IV. 지식재산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V. 주요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 VI. 마무리 하며

---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기반팀장

## 초록

지난 4월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드디어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의 심화와 스마트 혁명의 진전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득 3만 불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거시적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기업, 연구소 등이 총체적으로 지식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금번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과 지역의 지식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관이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입법 절차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미를 밝히고, 최종 공포된 지식재산기본법의 전체 구성과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이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 주제어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강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경영, 지식재산정책

## I. 서론

지난 4월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17대 국회<sup>1)</sup>에서부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드디어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이 2002년 “知的財産基本法”을 제정<sup>2)</sup>하고 일본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知的財産戦略本部”를 설치하여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1990년대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 산업경쟁력이 쇠퇴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知的創造立國”을 국가적인 Agenda로 만들기 위해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면,<sup>3)</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가 확대되고, 스마트 미디어 빅뱅<sup>4)</sup>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 측면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입법 절차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미를 밝히고, 최종 공포된 지식재산기본법의 전체 구성과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주요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이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안, 이병석 의원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안 등 3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 일본은 제 15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2002년 11월 26일)

3) 경쟁력강화의 디딤돌 지적재산전략대강과 지적재산기본법(고이케 아키라, 2002년 12월, 10면)

4) 스마트 미디어 빅뱅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유형·참여형 미디어로 진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II. 제정 추진 경과

### 1. 정부입법안 국회제출 경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 된 배경에는 2009년 7월 29일 개최된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가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하에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논의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주요한 자산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창의,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대 분야의 중점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활성화, 기술지주회사 등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행정·사법 체계 선진화 등 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행정·사법 체계 선진화 분야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범 정부적인 국가 Agenda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이 채택되면서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의장을 맡고 17개 지식재산 관련 부처<sup>5)</sup>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2009년 10월 27일에 구성하고, 2010년 2월 16일에 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sup>6)</sup>을 설치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 분야에서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산하에 자문위

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국무총리실

6) 기획단 조직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지식재산기획단 단장 역할을 겸임하고, 산업정책관이 부단장 역할을 담당하며 실무조직으로 지식재산정책팀과 지식재산기반팀을 두고 있다.

원회<sup>7)</sup>를 설치하였다.

2010년 3월 3일에 개최된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도 이내에 정부입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키로 하였다.

정부는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 및 국내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정부입법(초)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 16일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간담회, 전문가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산업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사항 등 주요 쟁점<sup>8)</sup>을 조정하기 위해 제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5월 12일에 개최하였으며, 곧 이어 대국민 공청회를 6월 28일에 개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정무위에 정부안을 8월 4일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18대 국회에서도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종혁 의원이 국회의원 102인을 대표하여 2009년 11월 4일에 입법안을 제출하였고, 김영선 의원 또한 국회의원 10인을 대표하여 2010년 9월 1일에 입법안을 제출하여, 정부안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 2.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제294회 정기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010년 12월 6일에 개최되었다.<sup>9)</sup> 정부안을 기본으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전체 37개 조문 중에 24개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

7) 자문위원회 의장은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되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15인으로 구성하였다.

8) 법안의 명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지식재산의 개념 정의 및 범위 등

9) 법안심사소위는 12월 2일에도 개최되었으나, 실질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 상정만 이루어 졌다.

쳤으나, 2011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추가적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2011년 3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3월 4일에 개최되었으나, 정무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 등으로 여·야간 경색된 분위기하에서 법안심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법임으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따라,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나머지 13개 조문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4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연기되었다. 2011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를 거쳐 여·야간 특별한 쟁점 없이 잔여 조항에 대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기본법이 2011년 4월 29일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III.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의

지식재산기본법은 기본법이란 법적 위상을 갖고, 헌법과 관련 개별법의 중간에 위치하여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0)</sup> 지식재산기본법의 헌법적 근거는 우리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 조항, 제22조의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 보호 조항,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조항, 제119조 및 제127조<sup>11)</sup>의 경제조항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 관계 법령은 헌법 → 지식재산기본법 → 개별법 → 명령이라는 법체계를 갖게 되며, 지식재산기본법은 다른 지식재산 관련 개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10) 박영도, "일본의 기본법 제정동향", 월간법제, 2003. 11, 59면.

11)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규정하는 내용은 훈시규정, 프로그램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은 관련 법률<sup>13)</sup>의 제·개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하며<sup>14)</sup> 개별법은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sup>15)</sup>

다만,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를 기속한다.

## IV. 지식재산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1. 법안의 명칭

지식재산 기본법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기본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안 마련 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문화부, 외교부 등은 “지식재산”은 ‘지식’(knowledge)과 혼동될 수 있고, 창의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知識’이라는 명사보다는 ‘知的’이라는 관형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교과부, 지경부, 특허청 등은 최근에 제정, 개정된 법률<sup>16)</sup> 등에서 ‘知識財産’이라는 용어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정신적 활동에 한정하여 강조하는 경우 상표, 도메인 이름 등 상대적으로 창작성이 약한 내용을 포괄하기 곤란하므로 “知識財産”<sup>17)</sup>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대립되었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제1차 자문위원회 및 제2차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지식재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정부위원회 논의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식

12) 즉, 기본법의 규정으로부터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박영도, 전거서, 59면)

13) 과학기술기본법, 발명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50여개 법률이 존재한다.

14)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융합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정책 연구, 2010. 10, 21면.

15) 지식재산기본법 제5조

16) 「공직자윤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용어를 변경하였다.

17) 중국, 대만 특허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Intellectual Property”를 중국에서는 ‘知識產權’, 대만에서는 ‘智慧財產’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 기본법으로 법안명칭을 확정하였다.

## 2. 주요 구성

지식재산 기본법은 제5장 4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5장 보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5개의 조항이 있다.

제1조(목적)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고 제안되었으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로 수정되었다.

제2조(기본 이념)에서는 1항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2항에서 효과적인 보호, 활용의 촉진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3항에서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4항에서 지식재산 규범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정의)에서는 1항에서 “지식재산”의 개념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4항에서 “공공연구기관”을 5항에서 “사업자 등”에 대해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1항에서 국가가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3항에서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적극적인 활용,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4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이 서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1항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기본법이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상위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4.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서는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지식재산 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제14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연차보고서) 등 10개의 조항이 있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1항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 것을 규정하고,<sup>18)</sup> 2항에서 심의·조정 사항을 열거

18)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에 의해 수상이 의장으로 참여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미국의 경

하고, 3항에서는 심의·조정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의 심의·조정 사항은 1호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2호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3호에서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4호 및 5호에서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1항에서 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항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하고, 3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sup>19)</sup> 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5항에서 공동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함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공동 위원장 각자가 모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논의에 따라 직무 수행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원칙적으로 회의 소집 및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민간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6항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7항은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1항에서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2항

우에는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IP)에 의해 대통령실 소속으로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를 두고 있다.

19) 1호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 2호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 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없이 공고하며,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은 심의를 거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3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sup>20)</sup> 4항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1항에서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의 경우에도 심의하여 확정할 것을 규정하고, 3항에서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서는 1항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함을, 2항에서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항은 개선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에서는 1항에서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관련 정부기관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사무기구 직원을 파견받거나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3항은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에서는 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20)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등 포함될 항목을 총 16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장과 시·도지사가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기속하고 있으며, 2항에서 위원회가 1항에서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 1항의 통보 및 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서는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연차보고서)에서는 1항에서 정부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2항에서는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5.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서는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등 3개의 절이 있으며,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에서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등 13개의 조항이 있다.

### 1) 제3장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촉진

제3장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촉진에는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등 4개의 조항이 있다.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에서는 정부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1호의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분석, 2호의 미래 지식재산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시장에 대한 전망, 3호의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호의 연구자·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호의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6호의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호의 기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2항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항에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2항에서 신지식재산 현황을 조사·분석 하고, 3항에서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2) 제3장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제3장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강화에는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등 5개의 조항이 있다.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촉진)에서는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1호의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호의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호의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호의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관련 기관·단

체와의 협력 방안, 5호의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호의 기타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소송체계의 정비 등)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2항에서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활성화)에서는 정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등 재판 외의 간이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3개항에 걸쳐 규정한 것을 관련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하여 한 개의 조문으로 수정하였다.<sup>21)</sup>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호의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호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 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호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력 방안, 4호의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제공,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보호)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21) 특히 정부안에서 제2항은 정부가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판외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 제3장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3장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는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등 4개의 조항이 있다.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호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호의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호의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호의 지식재산의 유동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호의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호의 기타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2항에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 거래 및 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자문 등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것을 규정하고, 2항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3항에서 우수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 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4항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과세, 세금감면 규정을 2항에 두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sup>22)</sup>의 입법취지를 감안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① 이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각 호의 법률(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5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하여 개별 법률에 세제지원 근거를 두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국회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3항의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규정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없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영선 의원안의 제안<sup>23)</sup>이 반영되었다.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2항에서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 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항에서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2항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3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는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등 10개의 조항이 있다.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항에서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

23) 김영선 의원안 제29조③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항에서 지식재산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 2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3호의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의 육성 방안, 6호의 기타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항에서 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2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하고, 3항에서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종혁 의원안의 제안<sup>24)</sup>이 반영되었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2항에서 초·중등 및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3항에서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

24) 이종혁 의원안 제30조②

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4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도 지식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항에서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3항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고, 4항에서 관련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회 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영선 의원안의 제안<sup>25)</sup>이 반영되었다.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2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고, 3항에서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에서는 1항에서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항에서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3항에서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항의 규정이 없었으나 국내 지식재산제도가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논의에 따라 이종혁 의원안의 제안<sup>26)</sup>이 반영되었다.

25) 김영선 의원안 제24조②

26) 이종혁 의원안 제34조①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서는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 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에서는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7. 제5장 보칙<sup>27)</sup>

제5장 보칙에는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2개의 조항이 있다.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에서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서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8. 부칙

부칙에는 제1조(시행일) 및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2개 조문이 있으며, 제1조 시행일에서는 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당초 정부안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 등 보칙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이종혁 의원안을 반영하여 두 개의 조문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V. 주요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은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 전략(Entry Strategy)의 핵심 Agenda라 할 수 있다. IMF 환율 대란 및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져 청년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빈부 격차라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속한 시일에 국민 소득 3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지식기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美國, 日本 등 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해 왔다. 최근의 세계경제 환경은 WTO 출범 이후에 지식재산의 통상무기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특허괴물의 소송이 급증하는 등 총성 없는 지식재산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지식재산 전쟁터를 지휘할 사령탑(Control Tower)없이 개별 기업이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창의 경제”로 바꾸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고,<sup>28)</sup>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 지식재산기본법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1. 국가지식재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 영역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지도

28)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 민간 부문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을 요구해 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010년 4월 1일에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國富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 11월 3일에 경제5단체를 대표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도 2011년 2월 16일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급의 역량 있는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범국가적인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의 폭 넓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지향할 국가지식재산전략에 대한 해안을 갖고 국가경제의 체질을 지식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적 지도자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관련 정부부처의 기관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에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미래 지식재산 분야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각 계 지도층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분기에 일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안의 실무적 검토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분야별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연구실이나 산업현장, 또는 기업 경험을 통하여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재로 구성하여 정부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을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평가하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실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월별로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현안을 시의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정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무기구(가칭 '지식재산정책실')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sup>29)</sup>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무

29) 2011년 1월 26일 개최된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회의 시 대다수 민간 자문위원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기구를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하기보다는 국무총리실에 정규 조직

기구는 국정총괄 및 조정 기능과 연계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유리하다.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지식재산 관련분야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업무 역량이 탁월한 직업 공무원들과 전문가 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면 민관의 경험과 역량이 하나로 모여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기본계획은 정부 각 부처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범국가적인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범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명확히 밝혀주고, 또한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해 준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지식재산기본계획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수립중인 기본계획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에 범국가적으로 달성할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과제를 발굴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기본계획은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관련 정책의 종합화, 체계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신성장동력 전략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향후 급변하는 5년 동안의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한민국의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명확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정부, 기업, 연구소, 개인 등 개별 경제 주체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 전략을 보다 정치하게 짤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대응은 여태까지 종합 청사진의 공유 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던 과거에 비해 국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시행계획은 연도별계획이므로 정부예산안 편성과 연계되어야 하며, 또한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차년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3.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역량 강화

삼성, LG, 현대차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애플, IBM, 도요타 등 선진국의 주요 경쟁 기업에 비교해 보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지식재산경영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단순히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만들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애플사가 아이패드2를 499달러에 출시하면서 저가고품질 제품 출시 전략이 더 이상 개도국 기업만의 경쟁력 요소가 아님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다. 애플사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지식재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경쟁을 주도할 수 있다. 애플사의 혁신적인 가격 공세에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대응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은 국내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MP3 플레이어를 제작하기로 유명한 아이리버사와 휴대전화 생산업체 팬택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30) 「애플 따라가기」 국내 업체들 허리 휜다, 조선일보, 2011. 4. 5자.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가고 품질 전략뿐만 아니라 고유 브랜드 투자, 세련된 디자인 확보, 경쟁력 있는 기술·특허 포트폴리오 구비, 지식재산 라이선싱을 통한 전략적 제휴 관계 형성, 표준 및 플랫폼 선점 등 지식재산 경영역량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문 인력 확보, 지식재산 업무시스템 구축,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등 개별 기업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개별 기업이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한계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의 하나로서 지식재산경영 인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지식재산 경영 전담 조직을 갖추고,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창조적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창출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식재산서비스 산업<sup>31)</sup>은 그 자체로서도 글로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인프라로서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은 전체적인 지식재산 창출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들도 영세한 규모와 낮은 수익률로 기업이 원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sup>32)</sup>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31) 지식재산 정보검색 및 분석, 지식재산 거래 중개·협상,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컨설팅, 권리보호 및 분쟁 대응 법률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32)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잠재 시장 규모는 약 7,002억원에서 최대 9,021억원 수준이나 실질 시장 규모는 약 3,377억으로 잠재 시장 대비 37%~48%에 불과하며,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1인 매출액은 81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식재산서비스 협회, 2011, 9-14면)



기반 형성 등을 위해서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있다.

#### 4.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은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지식재산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역 단위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별로 지식재산 포럼을 구성하여 창업화 지원, 컨설팅 서비스, 금융 분야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며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혁신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정책수단이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연계되고, 지역별로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현장중심의 지식재산 지원 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VI. 마무리 하며

최근 우리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느끼며, 몸으로 체휼하고 있다. 지식이 더 이상 책속에 담겨있거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

하며 현실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인류의 삶의 양식과 문화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뀌는 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TGIF<sup>33)</sup>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일본의 산업경쟁력에 뒤처져 미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엔화 환율 인상을 위해 기 싸움을 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를 침체로 빠뜨리며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중국과 유럽에 뺏기는 듯한 양상을 빚어 왔었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은 거시적으로는 WTO 체제를 출범시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품질 좋은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미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이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은 R&D, 브랜드, 디자인에 집중하면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 시대의 강자로서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

미국 기업이 창조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선택과 집중이 저가고품질의 제조업 중심이어서는 소득 3만 불의 조기 달성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도 거시적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기업, 연구소 등이 총체적으로 지식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브랜드 경영, 디자인 경영, 특허 경영, 지식재산 경영을 우리 기업의 화두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의 지식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관이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33) TGIF는 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조어다.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수, 일본 지식재산기본법 저작권 세부 전략 및 성과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경쟁력강화의 디딤돌 지식재산전략대강과 지식재산기본법, 대한변리사회 역, 2003.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융합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정책 연구, 2010.
- 박규호 · 이은경, 미국특허상표청의 2007-2012년 지식재산전략계획에 대한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 박영도, “일본의 기본법 제정동향”, 월간 법제, 2003.
- 세노우 겐이치로, 기술력의 일본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21세기북스, 2011.
- 정지훈, 오프라인 비즈니스 혁명, 21세기북스, 2011.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 2008.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제 ·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2010.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현실과 향후 전망에 대한 조사 연구, 2009.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National IP Policy 미국 · 유럽 · 일본 · 중국, 2010.

## Policy Implication of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on-Kil Yoon

###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FAIP)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April 29, 2011 after having been enacted in consultation with all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concerned.

Recent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smart media innovation suggest new opportunity and big challenge for Korean economy. In order to achieve US\$ 30,000 per capita income in coming future soon, Korea is in the moment to take innovative approach for strengthening the knowledge competitiveness of Korean economy. At the macro level, investment on R&D should be increased and industrial renovation is needed to develop and expand knowledge industry. Korea should set up national policy to strengthen knowledge competitiveness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Above all, FAIP would play great role in strengthening social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knowledge capac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of region. According to FAIP,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eering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comprising ministers concerned and opinion leaders of Korean society in July, 2011 in order to function as the control tower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If the Committee do its best in harmonizing all the voices from society and in executing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reform Korean economy at regional level and also at national level, Korea will be the

power house of the world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enacting FAIP and legislation processes and clarifies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Act. It explains the overall structure of FAIP and individual articles of the Act. At the last part, it suggests some major policies to be implemented in the national framework envisaged in FAIP.

**Keywords** .....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eering Committee,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Management,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